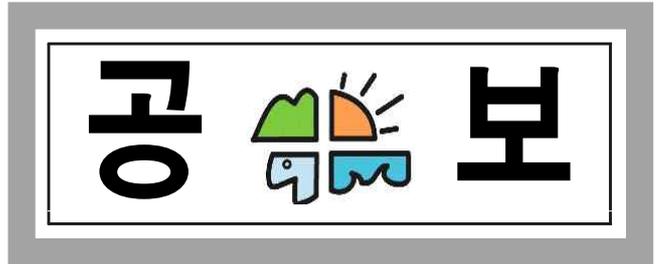


# 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770호 2013년 4월 29일(월)

## 규 칙

-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..... 2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

2013년 4월 26일

속초시규칙 제1296호

###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 「속초시평생교육 문화센터 운영조례」 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” 를 “ 「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」 ” 로 한다.

제2조제1항 본문 중 “조례” 를 “ 「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」 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” 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이를 허가” 를 “선발” 로 하고,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아의 나이는 만 24개월 이상 취학전 유아로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별지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3호서식]

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 
수 강 신 청 서 (제2조제1항제2호 관련)

접수번호 : V -

주 소			
성 명		주민등록번호	
세대주성명		전화번호	
신청과목		개인정보취급	동의 / 거부

「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※ 관내거주 및 기타 증빙서류 확인을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하여야 합니다.  
만약, 동의 거부시 주민등록 등·초본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속 초 시 장 귀하

접 수 증

접수번호 : V -

신청과목		※ 수강료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사항 참조
성 명		

위와 같이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속 초 시 장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규칙은 「<u>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</u>」(이하“<u>조례</u>”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규칙은 「<u>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</u>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</p>
<p><b>제2조(사용신청)</b> ① <u>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</u> 1 ~ 3 생략 ② 생략</p>	<p><b>제2조(사용신청)</b> ① 「<u>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(이하“조례”라 한다)</u>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 1 ~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</p>
<p><b>제3조(사용허가)</b> ① 생략 ②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강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순위 또는 추첨에 따라 <u>이를 허가하여야 하며, 교육을 수료하였을 때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</u> ③ <u>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신청자에게 만 30개월 이상 취학전 어린이에 대하여 놀이방 위탁을 허가할 수 있다.</u> ④ 생략</p>	<p><b>제3조(사용허가)</b>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강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순위 또는 추첨에 따라 <u>선발하여야 하며, 교육을 수료하였을 때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</u> ③ <u>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아의 나이는 만 24개월 이상 취학전 유아로 한다.</u> ④ 현행과 같음</p>
<p><b>제10조(도서의 이용)</b> ① 시장은 도서를 구입 또는 기증을 받을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·정리하여야 한다. ② 도서를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③ 도서의 대출은 1인 2권으로 하고,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, 반납이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의 2배일간 대출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&lt;삭제&gt;</p>